

문서번호 : KARA-2023296

시행일자 : 2023. 07. 26

제 목 :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별위원회 추가심의의 건

1.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9일(수), 상별 및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했다는 이의(규정 20조2항)를 받아들여 상별위원회에 추가심의를 요청하였음. 이에 상별위원회는 추가심의를 하기로 결정함. 끝.

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

